

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5. 18.(수) 16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-(주)현대중공업 등 5개 법인 - (2011-30-100)

○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의거, 5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허가신청 법인[현대중공업, (주)파인디지털]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신규허가함

2) SK텔레콤(주)과 (주)KT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1-30-101~102)

○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(이하 “SKT”)과 (주)KT(이하 “KT”)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고, 직권해지 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.

※ 수정내용 : KT에 대한 시정명령(이용약관 변경) 내용 중 '직권해지 ()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'를 '직권해지 7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'로 수정하여 고지일자를 명시함

○ 주요 내용

① 위반내용

①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 :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

< 직권해지 소요기간 >

구 분	SKT	KT
대상인원	120,595명	45,239명
소요기간	1.0 ~ 21.9개월	9.1 ~ 70.1개월

※ 조사대상 기간 : 2010. 1월 ~ 2010. 11월

- (SKT) 연체자별 직권해지 소요기간이 이용정지 후 1개월에서 21.9개월에 이르는 등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,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

※ SKT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기본료(월 3,850)를 계속 부과하였는데, 이용정지 후 발생하는 기본료(10개월, 38,500원)가 재가입비(SKT 39,600원)보다 더 발생하는 11개월 이상 유지시는 이용자에게 결코 이익이라 할 수 없음

- (KT) 이용정지 후 9개월간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해지를 일률적으로 유보하고, 기본료를 부과(9개월, 34,650원)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으며,

·명확한 기준 없이 직권해지 함으로써 이용자 간 직권해지 소요기간이 9.1개월에서 70.1개월까지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됨

② 직권해지 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 :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3] V-2호-라목을 위반

- SKT 및 KT는 직권해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해지 안내시 단순히 해지될 수 있다는 점만을 고지

·실제로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는 이용자가 직권해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, 이로 인해 이용자가 요금연체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회복여부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함

② 시정명령 내용

① 업무처리절차 개선(SK, KT)

-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,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

② 이용약관 변경(KT)

-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직권해지 7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.”는 내용을 포함토록 이용약관을 변경할 것

③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(SK, KT)

-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 관련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

3) 지상파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- (주)경기방송과 (주)경인방송 등 2개 방송사- (2011-30-103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, (주)호주건설의 (주)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 및 광창군의 (주)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이행각서를 받은 후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(주)경기방송, (주)경인방송에 부과한 승인조건 내용

-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송전문 경영인(사장) 제도를 유지하고,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할 것

② (주)호주건설에 제출하도록 한 이행각서 내용

-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음

- (주)경기방송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겠음

- 방송관련 전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위촉하겠음

③ 주식 변동 내역

방송사업자명	변경 전		변경 후	
(주)경기방송	(주)경기필 심기필	29.81% 26.44%	(주)호주건설 심기필	39.81% 16.44%
(주)경인방송	정복균	77.37%	광창군 (주)경기고속 박학선	38.05% 26.21% 13.11%

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의 (주)동서디지털방송 주식 취득 - (2011-30-104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,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의 (주)동서디지털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.

< (주)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변동 내역 >

변경 전		변경 후	
이석래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 5%이상(6명) 5%미만(10명)	30.8% 15.6% 46.6% 7.0%	(주)티브로드낙동방송	100%

사. 보고사항

1)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○ IPTV 등 신규매체 도입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방송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·규제 정책 마련 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(안)」을 김준상 방송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시장에 대한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분석·평가 시 방송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- 각 평가대상 시장 간 상호 관계, 수직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·평가

② 방송·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분석

- 방송·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이에 대한 경쟁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

※ '10년 SkyLife 결합상품 가입자는 1/4분기에 14.9만명, 2/4분기에 32.3만명, 3/4분기에 41.7만명, 4/4분기에 64.3만명으로 지속증가

③ 방송사업자의 사업구조, 기업결합 형태와 동향 등을 분석하고 방송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- 기업결합 후 방송시장 구조 변화, 특수관계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

④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경쟁상황평가 위원회 구성 준비
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쟁상황평가 기준·절차·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

2)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등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대표번호 제도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, 신규 이동전화서비스(LTE, MVNO)의 번호 부여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된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개정안과 「시내전화,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을 황철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
○ 주요 내용

- ① 대표번호에서도 번호이동을 시행하고, 대표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 확보, 번호부여 기준과 이용자보호 근거 마련 등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
 - **(번호이동 시행)** 가입자가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이 저렴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에도 번호이동제도를 도입
 - **(번호자원 확보)** 대표번호는 '15YY', '16YY', '18YY'의 특수번호 중에서 뒤의 두 자리(YY)가 동일한 번호를 사용토록 규정
 - **(번호부여 기준)**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대표번호의 총 사용비율이 80% 이상인 경우에 번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
·특정사업자가 대표번호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번호부여 단위를 조정 (1만개→1천개)
 - **(이용자 보호)** 대표번호로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통화료 부담에 관한사항(유료, 시외요금 부과 등)을 이용자에게 안내토록 하고,
·자동응답전화(ARS)의 긴 통화대기 시간, 복잡한 메뉴구조의 개선 등 이용자보호 대책 근거 마련
- ②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(LTE, MVNO)에도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와 동일한 '010'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
- ③ 사업자의 공통서비스 식별번호(0N0)별 용도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050(개인번호), 060(전화정보), 080(수신자부담전화) 등과 같이 개선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7:20)